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시·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

시·도지사가 보고해야 하는 추진 실적 기간이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어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다소 짧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실적 기간을 전년도로 조정하여 시·도지사가 실적 보고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부령 제 호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의”를 “전년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<u>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의</u>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	제5조(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) ① ----- ----- <u>전년</u> <u>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②·③ (현행과 같음)